

1. 제안이유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420호, 2020.6.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2021.6.10.)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

나.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공표기한 및 방법을 규정

다.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공개 규정 신설(안 제3조)

- 도시숲등 현황에 대한 공개내용 및 방법을 규정

라. 토지등에 대한 매수 규정 신설(안 제4조)

-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등의 매수 등에 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

마.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측정·평가해야 하는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항목과 측정·평가의 방법·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준 및 행위, 기록·관리에 관한 사

항을 규정

사.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7조)

-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절차·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

아. 도시숲지원센터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8조)

- 도시숲지원센터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자.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9조)

- 인증기관 업무내용·지정기준·절차 및 시정명령·지정취소 세부기준을 정함

차.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절차·방법 및 인증 취소·공고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카. 보조금의 반환이자율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1조)

- 보조금에 가산되는 이자율은 「민법」에 따른 법정이자율로 정함

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징수, 납부 기간, 가산금,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파. 시행규칙의 시행일(부칙 제1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하.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등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거. 다른 법령의 개정(부칙 제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내용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수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림청 누리집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도시숲등에 관한 현황 공개) 산림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역별 도시숲등의 유형·기능별 면적, 1인당 도시숲등의 면적 등에 관한 현황을 산림청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조(토지등에 대한 매수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협의매수 및 임차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5조(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설정·운영하여야 하는 관리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의 생태적 건강·활력도 : 식물의 생장 정도, 토양환경의 건전성, 오염·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 정도, 생태적 복원 정도 등
2. 도시숲등의 생태적 다양성 : 생물다양성 및 생태적 연결성, 서식지 보존·관리 정도 등
3. 도시숲등의 사회·경제적 편익 : 국민의 건강·휴양·정서함양 정도, 사회·문화·경제적 기능 정도 등
4. 도시숲등의 재해방지 효과 : 홍수, 산사태, 토사유출, 산불 및 소음 등 각종 재해방지 정도 등
5. 도시숲등의 기후보호 기여도 : 탄소 흡수 및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 기여도 등

②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측정·평가는 제1항의 관리지표에 따라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별로 측정·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측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기간, 내용 등이 포함된 측정·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2항의 도시숲등의

측정·평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결과를 해당기관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이외에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관리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로수의 바뀌심기
2. 가로수의 메워심기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려면

미리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도시숲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관련 사업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도시숲지원센터 운영계획서(프로그램 개발·운영계획 포함)
5. 인력·시설·장비 현황 및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지정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

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기관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지정현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수행,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도시숲지원센터 지정 취소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를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에 대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면 미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절차 및 취소 등) ①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4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신청서를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및 도시숲등의 소개서
2.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내용
3. 도시숲등의 이용 활성화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인증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②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받은 도시숲등을 모범 도시숲등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하는 경우
2.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경우

⑦ 인증기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결과, 인증서 발급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인증 결과, 인증서 발급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그 사실을 산림청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이자율)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에 가산하는 이자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자율로 한다.

제12조(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부과할 때에는 의견제출, 청문, 처분 등의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납부를 고지할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의 이자율을 부과한다. 이 경우 가

산금의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납부의무자가 가산금을 포함한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고지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납부비용을 환급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의 예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환급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의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4절(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을 삭제한다.

별표 10과 별지 2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가로수의 조성·관리기준(제6조제4항 관련)

1. 기본방향

가로수 조성·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민의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나.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 제공한다.

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숲을 조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로수의 진료(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가. 바뀌심기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

나. 메워심기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

다. 가로수 지주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

라. 가로수 보호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

마. 가로수 보호덮개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이라 한다)의 시설물

바. 가로수 보호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

3.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수종은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 (2) 발육이 양호할 것
-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 (5) 재배수인 경우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 남음)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 (6) 재배수가 (1) 내지 (4)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이식할 수 있을 것

4. 식재 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식재 지역

가로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 가.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역
- 나. 도시지역의 단절된 녹지 간 또는 하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
- 다. 도시지역 중 보행이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 지역

6. 식재 제한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도로의 길어깨
-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樹冠幅)·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나. 교목성(큰키나무류)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7.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뀌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8.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선·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병해충 방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 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3. 점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 점검시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매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식재와 관리의 시행

식재와 관리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5. 관리 협의 및 재정

가.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간 협의에 따라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16. 보고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가로수 조성실적을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가로수 조성실적을 익년도 2월말까지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도시숲지원센터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아래의 표에서 규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요 소	지정기준
1. 인력기준	도시숲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근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운영 및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인력 1명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3. 업무규정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업무 규정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바목부터 아목까지는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에 한한다. 가. 도시숲등의 관리지표 운영 나.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다.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라. 도시녹화운동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민간협력 마. 도시숲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바.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운영관리 및 모니터링 사. 도시숲지원센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아. 도시숲등의 실태조사·통계관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16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보고 · 검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 제3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제9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18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18조 제3항제2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보고 · 검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4호	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시숲등 인증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8조 제3항제3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모범 도시숲등 인증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공통기준

가.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은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유형별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유형의 인증을 세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도시숲
- (2) 생활숲 :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 (3) 가로수 : 가로수

나.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을 위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는 30점 만점에 최소 15점 이상, 현장심사는 70점 만점에 최소 42점을 받아야 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합산 점수가 66점 이상이어야 한다.

- (1) 서류심사 : 항목별 점수를 평균내어 3을 곱하여 산출하되,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출한다.
- (2) 현장심사 : 항목별 점수를 평균내어 7를 곱하여 산출하되,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출한다.

라. 모범 도시숲등의 심사항목은 유형별 개별기준에 따르며 항목별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하고, 항목별 배점 점수는 아래와 같다.

0~1	2~4	5~6	7	8	9	10
매우 미흡	미흡	조금 미흡	보통	조금 양호	양호	매우 양호

2. 유형별 개별기준

가. 도시숲 및 생활숲 : 도시숲, 생활숲의 유형에 따라 해당되는 세부 평가기준을 적용할 것.

항 목 별	지 표	세부 평가 기준
입지조건	규 모	(1) 유형별 특성 및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었는지 여부
	위 치	(1) 유형별 특성 및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되었는지 여부 (2) 주변의 산림(숲) 또는 자연환경과 단절되지 않고 잘 연결되었는지 여부 (3) 누구나 쉽게 안전하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되었는지 여부

구성설치	부합성	(1) 유형별 특성 및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수종 또는 식재방법으로 조성되었는지 여부 (2) 훼손없이 주변의 경관 또는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성되었는지 여부
	안전성	(1) 장비·시설의 안전성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여부 (2) 재해위험 우려지역 등에 적절한 예방·방지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3) 이용자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적절성	(1) 유형별 목적 및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지 여부 (2) 장비·시설의 위치가 분명하게 잘 표시되었는지 여부
유지관리	쾌적성	(1)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2) 반려동물에 대한 오염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여부
	유지보수	(1) 장비·시설 및 건축물 등이 기능을 유지하도록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 원예, 수목 등 식물의 생육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여부
	환경관리	(1) 건강한 토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화학비료, 농약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2)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3)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감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가 있는지 여부
	환경보전	(1) 자연적 경관 및 건물·구조물의 역사적·문화적·디자인적 특징을 잘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2)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활용효과	지역참여	(1) 운영관리 및 개선 과정에서 지역사회 참여여부와 참여정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용도	(1) 여가(휴양), 체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 지역사회를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2)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이용하고 만족도가 높은지 여부
	기능효과	(1) 유형별 특성 및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 여부
마케팅·홍보	마케팅·홍보	(1) 활동, 기능, 참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잘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2)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조직·계획	조직	(1)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관리계획	(1) 전반적인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나. 가로수

항 목 별	지 표	세부 평가 기준
입지조건	규 모	(1)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었는지 여부
	위 치	(1) 주변의 산림(숲), 녹지 또는 자연환경과 연결되었는지 또는

		연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되었는지 여부 (3) 누구나 쉽게 안전하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조성되었는지 여부
조성설치	대표성	(1) 지역의 향토 또는 대표 수종으로 조성되었는지 여부 (2)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충분한 연속거리 및 동일 수종·규격 등으로 조성·관리되었는지 여부
	안전성	(1) 안전한 보행·운행을 위해 충분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2) 재해위험 우려지역 등에 적절한 예방·방지 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3) 이용자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적절성	(1) 이용자의 활동 지원 및 안전을 위한 장비·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지 여부 (2) 장비·시설의 위치가 분명하게 잘 표시되었는지 여부
유지관리	유지보수	(1) 가로수 보호시설 및 이용자 안전시설이 기능을 유지하도록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생육상태	(1) 가로수의 생육상태가 양호한지 여부 (2) 건강한 토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화학비료, 농약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생육관리	(1) 가로수가 잘 생육하도록 가지치기,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등 관리를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지 여부 (2)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의 제거 등 생육공간이 충분한지 여부
	경관관리	(1) 자연적 경관 및 건물·구조물의 특징이 잘 보존되도록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2) 경관적, 심미적으로 안정감을 주도록 하층식생을 조성하고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활용효과	지역참여	(1) 운영관리 및 개선 과정에서 지역사회 참여여부와 참여 정도가 얼마나 높은지
	이용도	(1) 여가(휴양), 체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 지역사회를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2)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만족도가 높은지 여부
	기능효과	(1) 조성목적에 맞게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 여부
마케팅·홍보	마케팅·홍보	(1) 활동, 기능, 참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잘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2)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
조직·계획	조직	(1) 운영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관리계획	(1) 전반적인 운영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가로수 조성·관리대장

도로 노선명						구간	시점 종점					
도로 종류	종류					좌우측			연장거리			
도로폭	차도		좌측보도				우측보도					
가로수 조성현황	최초조성						준공일					
	사업비						시공일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 폭 (cm)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를 유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개 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본)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기관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명 칭				
	시 설	시설 구분	시설 수	면 적	비 고
	운영인력	명 (상근관리자 명, 전문인력 명)			
프로그램 운영계획	※ 프로그램 명칭 및 운영계획 등을 간략히 적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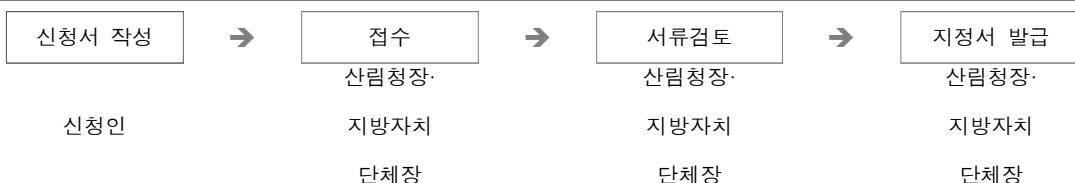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도시숲등 관련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도시숲지원센터 운영계획서(프로그램 개발·운영계획 포함) 5. 인력·시설·장비 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도시숲지원센터 지정서

지 정 번 호	제 호		
센 터 명 칭			
대표자 성명		기관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센 터 주 소			
관 할 지 역 (도시숲등 위치)	* 도시숲등의 위치가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교부할 수 있음		
지 정 기 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시
숲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또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모범 도시숲등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기관명(단체명)	법인등록번호(고유번호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명 칭				
	위 치				
	규 모	(㎡ 또는 km)			
	시 설	시설 구분	시설 수	면 적	비 고
프로그램	※ 프로그램 명칭 및 운영내용 등을 간략히 적습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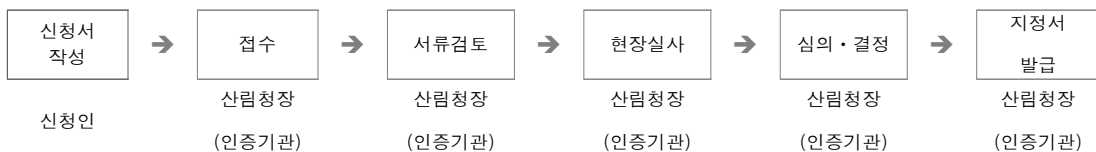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산 립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기관 및 도시숲등의 소개서 2.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내용 3. 도시숲등의 이용 활성화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인증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비고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은 생태적·경관적·경제적 측면에서 기술되어야 함
- 도시숲등의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 활동 제공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측면에서 기술되어야 함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

인 증 번 호	제 호		
명 칭			
신 청 기 관 대표자 성명		신청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신청기관 주소			
위 치			
규 모	규모	(㎡ 또는 km)	
	시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모범 도시숲등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